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월 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임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과의 정합성을 기하는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의 구분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2)

라.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마련(안 제4조의3)

마.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시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 사유 규정(안 제5조제2항)

바. 타당성조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4.7.4. ~ 8.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37조”로, “투자심사 대상·기준 등”을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로, “같은 법 제37조제3항”을 “같은 법 제37조의2”로,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투자심사기준)”을 “(투자심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 제목 “(투자심사의 구분 등)”을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제24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이전 사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

제4조제1항 본문 중 “그 사업의”를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으로, “전에 해야”를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를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로, “경우에는 그”를 “때에는 당해”로, “대해서도”를 “대하여 이를”로, “사업비가 직전 대비 30퍼센트”를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4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 판단서
4.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5.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본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6.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1조제4항”을 “영 제4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위원회의”를 “위원회·분과위원회의”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 시·도교육감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

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없이 심사를 재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투자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교육환경평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법정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6.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용역(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 실시 등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경우
- 제6조제3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경우

제9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

업의 경우

③ 시·도교육감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감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의2제1항”으로,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를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 절차)”를 “(타당성조사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로,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타당성조사 의뢰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타당성 조사가”를 “타당성조사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을 “(타당성조사 계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타당성 조사 계약”을 “타당성조사 계약”으로, “타당성 조사에”를 “타당성조사에”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다.

-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③ 시·도교육감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를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로, “타당성 조사를”을 “타당성조사를”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를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타당성 조사”를 각각 “타당성조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14조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u>투자심사 대상·기준</u> 등에 관한 사항과 <u>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u> 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7조 ----- ----- ----- ----- ----- <u>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u> ----- ----- <u>같은 법 제37조의2</u> ----- <u>타당성조사</u> ----- ----- -----.
제2조(<u>투자심사기준</u>)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u>투자심사 기준</u>) ----- ----- --- <u>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u> ----- ----- <u>제37조제1항</u>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u>7.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중앙의뢰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투자심사 제외사업) ① <삭제>

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

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
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
라 통합·운영하는 학교
를 신설하면서 「학교복
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
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제2

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
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
라 통합·운영하는 학교
의 이전 사업

3) 「초·중등교육법」 제2

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
전·개축 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

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제5
호에 따른 직속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교
육지원청 소속 기관(이하
“직속기관등”이라 한다)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
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제5조의2에 따
른 특별교부금을 신청
하려는 사업

나) 해당 직속기관등에
관하여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3
2조 외에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설치 근거
가 없는 사업

2)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시
설의 신축·개축 사업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
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
항에 따른 기록관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
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삭제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축·개축 사업

3)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마.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신 설>

3. 4. (생략)

4의2.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 재원(「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지원하는 사업

② 영 별표 제24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이전 사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삭 제>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
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
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
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
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
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
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생 략)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
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
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
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

<삭 제>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
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
는 경우에는 --- 전을 말한다)
에 하여야 ---. ---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
----- 때에는 당해-----
-----대하여 이를 -----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
-----.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7조제1항-----

----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

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

-----.

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 판단서

4.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5.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본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6.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7. 그 밖-----
--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1항제2호-----

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⑧ ----- 제7항-----
----- 위원회·분과위원회의

-----.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 시·도교육감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③ (생략)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
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
여 충분한 보완없이 심사를
재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
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
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
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교육환경평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타당성조
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법정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6.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
설계용역(기본설계를 생략하
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 실시 등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재심사) -----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생략)
2. 삭제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5. (생략)

<신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생략)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략)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
상의뢰심사 대상인 사업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4년 -----

4. 5. (현행과 같음)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경우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

<신 설>

③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 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시하는 사업의 경우

③ 시·도교육감은 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 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감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략)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 법 제37조의2제1항----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타당성조사-----

② -----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

-----.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타당성조사-----

-----.

② -----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
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
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신 설>

<신 설>

사 의뢰서-----.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타당성조사-----

--.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
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
다.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
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
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
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
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
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 설>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시·도교육감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
--- 타당성조사 계약-----
-----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타당성조사 -----
-----.

1. -----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 타당성 조사를 -----

--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

2. 타당성조사 -----

3. 타당성조사 -----

--

4. 5. (현행과 같음)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세부기준 등) -----
----- 타당성조사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락 처	(044) 203 - 6641 (044) 203 - 6642